

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377호

## 검단일반산업단지(3단계)관련 건축허가 제한 **변경** 공고

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.

2010. 3. 29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# 1. 제한 및 해제목적

- 사업대상지의 난개발 방지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건축물 용도 간 상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 개별적 건축행위가 제한된 3단계구역 중 검단1단계로 편입된 구역에 대하여는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고, 지구경계 누락된 구역을 추가포함

#### 2. 제한기간

- 2009. 8. 17 ~ 2011. 8. 16(2년) ※ 당초 고시일 : 2009. 7. 22
  - 1단계 편입구역 건축허가제한 해제일 : 2010. 4. 22일부터
  - 금회 편입구역 건축허가 제한기간 : 2010. 4. 22~2011. 8. 16(1년4월)

#### 3. 제한구역

- 위 치 : 서구 오류동 1000번지 일원
- 면 적 : **변경 3.04km<sup>2</sup>** (기정 3.00km<sup>2</sup>)

| 구 분        | 기 정                     | 변경(증·감)       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| 2,994,997m <sup>2</sup> | 증) 42,236m <sup>2</sup> | 3,037,233m <sup>2</sup> | 건축허가제한      |
| 해 제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감) 47,472m <sup>2</sup> | 47,472m <sup>2</sup>    | 1단계 편입면적 제척 |
| 제한구역<br>추가 | -                       | 증) 89,708m <sup>2</sup> | 89,708m <sup>2</sup>    | 지구계 누락분 편입  |

※ 도면게재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조)

#### 4. 제한근거

- 건축법 제18조제2항

#### 5. 제한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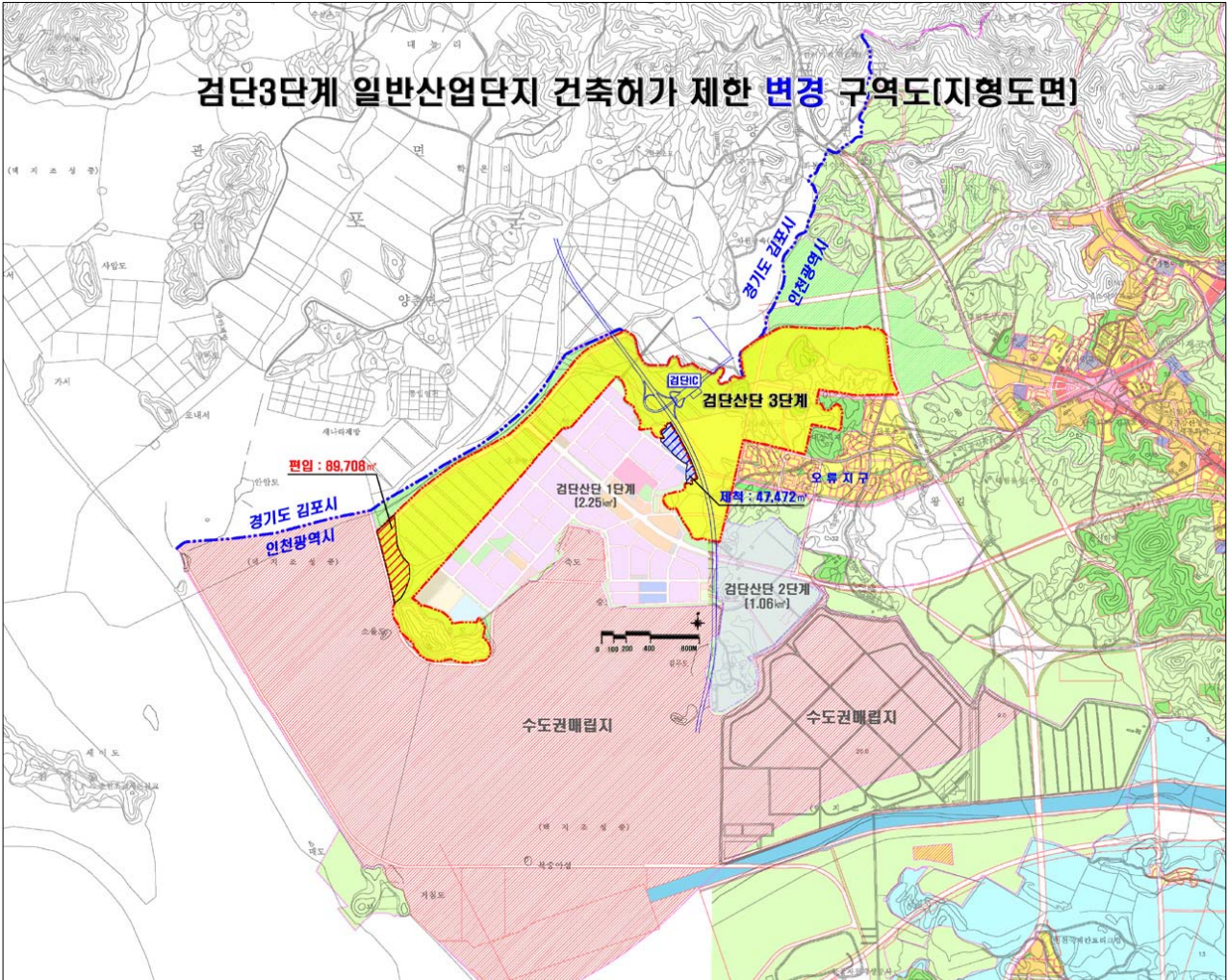
- 건축물의 건축(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포함)

##### - 제외대상

- 가설건축물의 축조(사업시행 전 무상철거 조건부여)
- 도시계획시설(공익성, 주민편익지향 등)에 대한 건축
- 재해복구·재난수습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

6. 기타사항 및 관계도서 열람은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(☎440-4652), 건축계획과(☎440-4732),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(☎560-47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건축허가 제한 변경 구역도



[검단일반산업단지(3단계) : 서구 오류동 1000번지 일원]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383호

##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공고

『계량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.

2010. 3. 29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

- 가. 검사대상 :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(관수동저울, 접시저울 및 판저울, 전기식저울, 이동식축중기, 눈새김탱크)  
나. 검사기간 : 2010. 4. 26. ~ 5. 10.(15일간)

### 2. 검사일자 및 장소

| 검 사 일 자        | 검사시간                | 검 사 장 소            | 검사대상 지역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0. 4. 26(월) | 10:00<br>~<br>16:00 | 가좌4동 축산물<br>도매시장 내 | 가좌4동 지역               |
| 2010. 4. 27(화) |                     | 가좌2동 주민센터          | 가좌2,3동 지역             |
| 2010. 4. 28(수) |                     | 가좌1동 주민센터          | 가좌1동 지역               |
| 2010. 4. 29(목) |                     | 석남2동 주민센터          | 석남2,3동 지역             |
| 2010. 4. 30(금) |                     | 석남1동 주민센터          | 석남1동, 신현원창동 지역        |
| 2010. 5. 3(월)  |                     | 가정1동 주민센터          | 가정1,2,3동 지역           |
| 2010. 5. 4(화)  |                     | 연희동 주민센터           | 연희,심곡,공촌,검암,경서,백석동 지역 |
| 2010. 5. 6(목)  |                     | 검단1동 주민센터          | 검단1,2동 지역             |
| 2010. 5. 7(금)  |                     | 검단3동 주민센터          | 검단3,4동 지역             |
| 2010. 5. 10(월) |                     | 서 구 청              | 전지역 미수검계량기,석유통,분동,추   |

- ※ 검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시하며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치 못할 경우에는 기간내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※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의 실시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별도 지정일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※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정기검사 공고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접수후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.
- ※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※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(☎560-44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385호

##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

건축허가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2010. 03. 29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# 가. 도로지정 근거

- 건축법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
-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(도로대장 등)

#### 나. 도로지정 내역

| 도로지정 위치             | 건축주        | 도로지정 현황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도로위치              | 도로지정 및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 인천 서구 가좌동<br>96-7번지 | 허흥회<br>영인숙 | 가좌동 96-7번지 도로후퇴부분 | 도로너비:4.0m<br>도로길이:18m<br>도로면적:13㎡ |    |

다. 공고 방법 : 구보게재, 구홈페이지 게시, 관할 동사무소 게시

라. 도면 열람 :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(☎ 032-560-4734)에 비치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386호

##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

1.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.

| 상호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| 구분 | 폐업일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|
| 럭키유통 | 인천 서구 가좌동 241-14                 | 민순애 | 일반 | 2010.03.29 |
| 아이사랑 | 인천 서구 마전동 686-28                 | 심상녀 | 일반 | 2010.03.29 |
| 동인   | 인천 서구 금곡동 검단1지구 5브럭2-2롯데<br>103호 | 차현태 | 일반 | 2010.03.29 |
| 김경열  | 인천 서구 가정동 515-1                  | 김경열 | 일반 | 2010.03.29 |

2.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,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**아래 기간 내에 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접수기간 : 2010.03. 29- 2010. 04. 05

나. 접수 및 문의처 : 서구청 지역경제과 (☎560-4434)

다. 접수서류

- 1)소매인지정신청서
- 2)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3)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- 4)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
- 5)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(장애인, 국가유공자 증명서류)1부.  
-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

라. 참고사항 (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)

- 1)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- 2)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
- 3)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
2010. 03.29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395호

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3월 31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취지

-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
- 타 시도 체납징수액의 30%를 우리 구 세수입으로 하는 징수촉탁제 활성화화를 도모하기 위하여
-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%를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협약을 통해 타 시도 체납분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, 견인 및 공매 등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징수촉탁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음 [지방세법 제56조제3항]
- 이에 전국적인 자동차세 체납징수 및 불법자동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징수촉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%를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

#### 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4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:세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201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성명(단체의;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조(지급범위) ① (생략)<br/>4. &lt;신 설&gt;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① (생략)<br/>7. &lt;신 설&gt;</p> | <p>제2조(지급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br/><u>4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</u></p> <p>제3조(지급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br/><u>7. 제2조제1항제4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</u></p> |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399호

## 신조 공인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0. 3. 31

#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인신조 사유
  - 공인 각인의 글자오류
2. 공인의 사용 예정일 : 2010년 3월 31일
3. 신조공인 인영

“별첨 참조”

# 신조공인 인영

| 연 번 | 신조공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| 규 격     | 인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 | 인천광역시서구<br>교육지원과<br>분임물품출납원인 | 1.8*1.8 |  |